

2021년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 19.(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89건(안전번호 제2021-6555호~741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6555호~6562호는 블로그에 영상 저작물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중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6563호~6567호는 ‘○○○○○’에 영상 저작물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이미 삭제된 제2021-6563호, 6564호, 6566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나머지 제2021-6565호~6567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55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8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2021-149호~233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총 85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D 위원님이 12쪽의 오탈자와, 18쪽의 발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 의견을 주셨음. 이외 전차 회의록 5쪽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밴드명, 7쪽 저작물명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E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B 위원,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밴드명,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8쪽~1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58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555호~656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이며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B,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6555호~656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563호~656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에 게시된 영상 저작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인용, 공정이용 등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저작권법 제3조에 의하여 일본 저작물에 대하여도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제2021-6563호는 삭제가 된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제2021-6563호~6567호에 대해 접속이 되는지 확인하여 보겠음. 현재 제2021-6563호, 6564호, 6566호 총 3건이 삭제되었음. '채널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었거나 제공이 중지된 동영상입니다.'라는 안내가 출력되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임.

- D 위원: 게시자가 삭제한 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 하십니까?
- B,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1-6563호, 6564호, 6566호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를, 제2021-6566호, 6567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568호~741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미드나이트 스카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614호 영화 ‘미드나이트 스카이는 12월에 개봉한 최신 영화로 현재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이며, 웹하드에서 해당 영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영화 ‘차인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6635호 영화 ‘차인표’는 2021. 1. 1. 넷플릭스에서 독점으로 서비스 중인 영화로, 웹하드에서 18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영화 '애비규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275호 영화 '애비규환'은 11월에 개봉한 한국영화이며 웹하드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3건을 포함한 1,551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6568호~741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6568호~741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1-6555호~741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9호~233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 19.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